

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 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4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7. 13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시행지침에 의하여 도 의회 사무처에 경리업무와 의정기록업무 전담계를 신설함에 따라,
- 조례에 규정된 사무직원의 정수를 현재의 50명에서 5명이 증원된 55명으로 조정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- 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정수 “50명” 을 “55명” 으로 개정

□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(별첨)
- 지방자치단체의지방공무원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 (별첨)
- 내무부 지방행정조직 개편시행 지침 (별첨)

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 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(사무직원의 정수) 중 “50명” 을 “55명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
제1조 (목적) (생략)	제1조 (목적) (현행과 같음)
제2조 (직무) (생략)	제2조 (직무) (현행과 같음)
제3조 (조직) ①~② (생략)	제3조 (조직) ①~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 (사무직원의 정수) 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<u>50명</u> 으로 하며, 그 직급별 정원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.	제4조 (사무직원의 정수) ----- ----- <u>55명</u> -----, ----- ----- -----.
제5조 (시행규칙) (생략)	제5조 (시행규칙) (생략)
부 칙	부 칙